

변호사시험법 개정안 추진을 위한 토론회

25. 2. 11. (화) 14:00 - 16:00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주최



국회의원 권칠승



국회의원 김준혁



국회의원 박군택

주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국회의원 권칠승

CONTENTS

【환영사】

권철승 국회의원	1
김준혁 국회의원	3
박균택 국회의원	5
홍대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7

【축사】

박범계 국회의원	8
----------------	---

【발제】

• 전문화과목에 대한 변호사시험법 개정(안)	11
서보국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실무위원회 위원장(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론】

이상훈 법무부 법조인력과 과장	33
구본억 교육부 인재양성지원과 과장	35
김정규 대한변호사협회 교육이사	37
문무기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38

환영사



권철승 국회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권철승입니다.

〈변호사시험법 개정안 추진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토론회 준비를 위해 힘써주신 홍대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님과 좌장을 맡아주신 이동원 교수님, 그리고 발제를 맡아주신 서보국 교수님의 열정과 노력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토론에 참여해 주신 법무부 이상훈 과장님, 교육부 구본억 과장님, 김정규 변호사님, 문무기 교수님께도 깊이 감사드리며, 토론회를 공동으로 주최해 주신 김준혁 의원님, 박균택 의원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2017년 사법시험이 폐지된 후 변호사시험은 법조인에게 자격을 부여하는 유일한 시험이 되었습니다. 총 14회에 걸쳐 변호사시험이 치러진 이 시점에서 현행 변호사시험이 전문분야의 지식과 경험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한다는 로스쿨제도에 부합하는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변호사시험 선택과목의 경우, 과목별 난이도 차이로 인해 수험생들은 보다 안정적인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과목을 선호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현장의 수요나 개인의 적성이 로스쿨 교육과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게 되었으며, 로스쿨제도의 도입 취지도 퇴색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선택과목에 대한 변호사시험의 평가방식과 로스쿨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과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주신 고견들은 제가 제22대 국회에서 발의한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의 심의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귀한 걸음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환영사

김준혁 국회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수원시정 국회의원 김준혁입니다.

행사 개최를 힘써주신 홍대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님, 고민과 제언을 담아 발제문을 준비해주신 서보국 교수님, 좌장을 맡아주신 이동원 교수님, 오늘 열띤 토론을 해주실 이상훈 과장님, 구본억 과장님, 김정규 변호사님, 문무기 교수님께 너무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행사주최를 위해 마음을 모아주신 권칠승, 박균택 의원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로스쿨 체제에서의 법학 교육이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교육을 통한 법조인의 양성이라는 로스쿨의 본래 취지와 달리 시험을 통한 법조인의 선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법시험 제도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도입된 로스쿨 제도가 사법시험의 문제점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변호사시험 선택법입니다. 변호사시험 선택법 응시 현황을 살펴보면 국제거래법, 환경법 등 일부 인기 과목에만 응시가 편중되어 있고, 경제법이나 조세법과 같이 실무에서의 중요도가 높은 과목들은 요구되는 학습량이 많거나 표준점수에서 손해를 본다는 등 이유로 기피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피과목은 학생들이 수강신청을 거의 하지 않아 폐강되는 실정이고, 폐강되지 않더라도 학생들이 학교 수업보다 학원 수업에 더 의존하는 등 학교 수업의 형해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로스쿨이 도입 목적인 실무가 양성기관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점점 어려워지는 변호사시험, 낮은 합격률, 짧은 수험기간이라는 상황 속에서 선택과 집중을 강요받는 학생들이 내린 불가피한 선택의 결과일지 모릅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를 알고 있었기에 관련 법률의 개정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 중 하나가 바로 선택법 평가방법의 Pass/Fail 전환과 이를 보완하기 위한 학점이수제의 도입입니다.

선택법 평가방법을 Pass/Fail로 바꾸고 학점이수제를 도입하면 수험부담이 줄어든 학생들은 필요하고 관심 있는 과목을 수강할 수 있게 되고 학교 강의에도 더 집중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학교도 선택법 전임교원을 더 확보하고자 할 것입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전문가들과 정책 관계자들이 모여 긴긴 논의를 펼치고, 해답을 도출하여 우리 고등교육 시스템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길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뜻깊은 자리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환영사



박균택 국회의원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박균택입니다.

〈변호사시험법 개정안 추진을 위한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토론회 준비를 위해 힘써주신 홍대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님과 좌장을 맡아주신 이동원 교수님, 그리고 발제를 맡아주신 서보국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열띤 토론 준비를 해주신 이상훈 과장님, 구본억 과장님, 김정규 변호사님, 문무기 교수님께도 깊이 감사드리며, 토론회를 공동으로 주최해 주신 권칠승 의원님, 김준혁 의원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2009년 도입된 로스쿨 제도는 2017년 폐지된 사법시험을 대체하는 유일한 법조인 양성제도입니다. 법률 지식의 습득을 넘어 다양한 전공 지식과 경험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로스쿨은 오늘날 당초의 취지와 달리 오직 변호사시험만을 준비하는 곳이 되었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현행 변호사시험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그 개선을 통해 로스쿨제도의 도입 취지를 되살리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수험 생활의 효율성, 합격의 용이성만을 고려한 선택과목 응시의 부작용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변호사시험 응시생이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의 이른바 ‘빅3’(국제거래법, 환경법, 국제법) 쏠림 현상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선택과목은 로스쿨 특성화와 법조인 전문성 강화를 내세우며 도입됐지만 ‘빅3’ 과목을 제외한 경제법, 노동법, 지식재산권법, 조세법 등은 철저히 외면받고

있습니다. 더욱 큰 문제점은 수강생 감소로 인하여 선택과목 자체가 폐강되고 교수 채용도 중단되는 등 학문의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응시생들이 관심 있는 과목을 수강하고, 로스쿨이 도입 취지 맞게 시대적 요구에 걸맞은 다양한 전문성을 가진 법조인을 양성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로스쿨의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변호사시험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분과 함께 힘을 모으겠습니다.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환영사



홍대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안녕하십니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홍대식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심포지엄 개최를 위해 힘써주신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국회의원님, 김준혁 국회의원님, 박균택 국회의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사회자와 발제·토론자를 비롯해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변호사시험은 변호사에게 필요한 직업윤리와 법률지식 등을 검정하기 위한 시험으로, 기존 사법시험에 의한 법조인 선발이 많은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설계됐습니다.

2012년 제1회 시험이 시행된 이후 올해 초까지 모두 14번의 변호사시험이 치러졌으나, 도입 취지대로 운영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AI가 방대한 정보를 순식간에 처리하는 시대에 현행 변호사시험은 10,000개 이상의 판례를 암기하고 그대로 출력해 내도록 수험생들을 내몰고 있습니다.

합격률 또한 50%대에 머물고 있어 자격시험이라는 취지가 무색해진 지 오래입니다.

이처럼 변호사시험 제도를 둘러싼 논의의 주제는 매우 다양하지만, 오늘 토론회에서는 전문적 법률 분야에 관한 과목(이하 '선택과목')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법학전문대학원을 도입할 당시, 선택과목의 존재는 기존의 사법시험 체제보다 전문 분야에 대한 강점을 부각시킬 것으로 기대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수험생들로 하여금 과락만 면하면 되는 과목으로 전락한 지 오래이며, 이미 많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선택과목 강의가 폐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변호사시험과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유기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변호사시험의 문제점이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의 부실화를 낳는 등 악순환의 고리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되는 내용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도 오늘 논의된 생산적이고도 미래지향적인 내용을 토대로 변호사시험 제도의 개선과 발전,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귀한 발걸음 해주신 내빈 여러분과, 발표와 토론을 준비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축사



박범계 국회의원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을) 국회의원 박범계입니다.

실력 있는 법조인 양성을 위해 늘 아낌없는 열정을 쏟아내시는 법학 교육인 여러분들과 선후배 법조인 여러분들께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또한 변호사시험 선택과목 개선을 위한 토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힘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지난 2003년부터 로스쿨 도입을 위한 발제를 시작으로 한국 법학교육계에 로스쿨과 변호사시험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과 관심을 기울인 바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현재 변호사시험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흔히 선택과목이라고 하는 전문화과목의 쏠림 현상으로 인해 복잡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본래 취지가 흐려지는 것 같아 우려스럽습니다.

단순히 시험 과목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 법조인을 선별하는 과정이라는 관점에서도 다양한 분야에 특화된 법조 인재들을 배출할 기회를 잃을 위기라는 점을 인식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현행 7개의 전문화과목 중 선택 비율이 매우 낮은 과목인 노동법, 경제법 등은 법적 다툼도 많을 뿐 아니라 다양한 이슈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중요한 법적 소양입니다. 미래의 법조인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이러한 맹점들을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매우 시급하면서도 중요한 당면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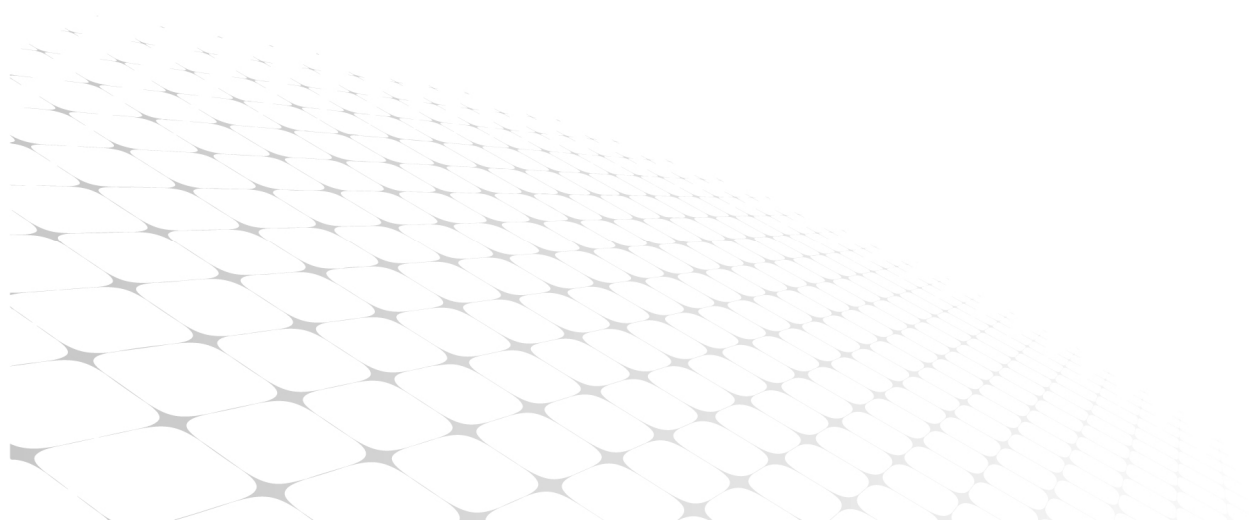
능력 있는 인재를 길러내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맞추어 선별하는 과정이 교육의 참 목표라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번 토론회는 법학 교육과 변호사시험의 미래 방향성을 점검하고 부작용을 교정해 나감으로써 더욱 실력 있는 법조인을 양성하고 법학 교육의 내실을 다질 수 있는 중요한 토론회로 기억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참석자 여러분들의 고견과 경험이 오늘 토론회에서 양질의 대안과 이정표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발제]

전문화과목에 대한 변호사시험법 개정(안)

서보국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실무위원회 위원장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문화과목(선택과목)에 대한 변호사시험법 개정(안)*

I. 서론

변호사시험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은 변호사시험법 제8조 제3항 및 제9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통상 ‘선택과목’¹⁾ 또는 ‘전문화과목’으로 줄여서 통용되고 있다. 문제유형 중 하나인 객관식 ‘선택형’과 혼동이 발생할 수 있어서 이하에서는 ‘전문화과목’으로 줄여서 사용한다.

변호사시험 전문화과목은 현재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로스쿨의 출범 취지와 부합하지 않은 채로 점점 임계점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전문화과목을 통한 법학교육의 전문화(특성화)라는 의미는 사라진 채 오로지 변호사시험 합격에의 유불리가 선택의 유일한 기준이 되어버렸다는 점도 부정하지 못하고 있다. 2023년 9월 법무부 주관 「변호사시험 선택과목 개선 토론회」에서 강명수 교수(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는 “... 변호사시험의 선택과목 ‘빅3’ 쏠림 현상을 해결하는 것은 단순히 시험 제도를 변경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라고 밝힌 바와 같이 시험제도와 교육과정 모두 개편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로스쿨 입시에서도 학교별 전문화(특성화)를 자기소개서에 반영하여 서술하는 것이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는 점을 학교나 지원자 모두 부정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전문화과목의 운용 현황과 로스쿨 특성화 현황을 바탕으로 시험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으로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주장한다.

* 발표문의 내용은 최근 학술등재지 게재논문인 서보국, ‘변호사시험 전문화과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법학연구,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24. 8., 35권 3호, 373-400면의 내용을 바탕으로 내용을 보완하고 법률 개정안을 추가하여 작성한 것임을 밝혀 둔다.

1) ‘선택과목’은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에서 법률용어로 규정하고 있다.

II. 전문화과목의 운용 현황

1. 변호사시험 전문화과목 응시자 현황과 ‘빅3’ 쏠림 현상

〈표 1〉 전문화과목 변호사시험 제1회~제13회 응시자 현황

화수\과목 (총응시자/합격율)	국제법 (비율)	국제거래법 (비율)	노동법 (비율)	조세법 (비율)	지적재산권법 (비율)	경제법 (비율)	환경법 (비율)
1회 (1,665/87.1)	94	413	516 (30.9)	59	82	228	273
2회 (2,046/75.1)	60	804 (39.3)	405	45	88	285	359
3회 (2,292/67.6)	63	1,032 (45.0)	359	33	61	225	519
4회 (2,561/61.1)	64	1,116 (43.5)	319	49	52	192	769
5회 (2,864/55.2)	95	1,240 (43.3)	405	57	73	199	795
6회 (3,110/51.4)	181	1,397 (44.9)	439	71	80	270	672
7회 (3,240/49.4)	241	1,404 (43.3)	415	81	95	309	695
8회 (3,330/50.8)	236	1,493 (43.2)	334	108	114	378	721
9회 (3,316/53.3)	303	1,224 (36.9)	242	99	115	427	906
10회 (3,156/54.1)	298	1,147 (36.3)	203	103	121	386	898
11회 (3,197/53.6)	348	1,291 (40.4)	169	87	98	336	868
12회 (3,255/52.9)	382 (11.7)	1,599 (47.9)	138 (4.2)	71 (2.2)	103 (3.2)	258 (7.9)	744 (22.9)
13회 (3,290/53.1) 14회 (3,763/???)	CBT시험으로 13회/14회 응시접수자는 증가하였으나 선택과목간 선택비율은 12회와 유사한 것으로 추정됨						

(위 〈표 1〉은 2023년 9월 법무부 주관 「변호사시험 선택과목 개선 토론회」 법무부 법조인력과장의 발표자료에서 발췌하여 가공한 것임. 12회 음영처리 과목은 이른바 82%의 응시생이 몰리고 있는 ‘빅3’ 과목임)

위 <표 1>에서 알 수 있는 응시생들의 선택기준은 수험부담이 낮고 표준점수에서 크게 불리하지 않은 것을 선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1~2회는 선택과목의 유불리를 응시생들이 인식하지 못한 데다가 전체 합격률도 70%가 넘었기 때문에 쏠림현상이 심하지 않았고, 또한 로스쿨 출범 당시 취지에 맞게 강의 개설도 다양하게 편성되어 있어서 수강한 과목을 바탕으로 선택과목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불합격자 누적으로 인해 시험 합격률이 하락하면서 재학생들에게도 시험에 대한 부담감이 늘어나면서, 전문화과목에 대한 수강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따라서 단기특강으로 시험준비가 가능하면서도 표준점수의 계산에 불리하지 않은 과목으로 쏠림현상이 계속 증가하게 되었다.

변호사시험 필수과목(민사법/형사법/공법)의 부담이 높아지게 되니²⁾ 그 반작용으로 전문화과목은 최소한의 부담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전문자격사(노무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등)인 수험생 또는 전문화과목을 이미 공부한 로스쿨 재학생들로 인해 표준점수를 계산했을 때 응시생의 수가 적은 과목의 경우에 원점수보다 표준점수가 더 낮아지는 위험성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중첩적으로 작용하였다. 결국 전문화과목 표준점수에 있어서 노동법(노무사), 지적재산권법(변리사), 조세법(공인회계사, 세무사) 과목은 선택할 유인이 거의 없다는 점이 밝혀졌다. 현재 응시생 중 앞의 3과목에 대한 선택은 각 2~5%에 불과하다. 따라서 현재의 제도로는 더 이상 개선될 여지는 없으며 갈수록 악화될 것이다.

2. 전문화과목 전임교수의 현황과 감소추세

아래의 <표 2>는 25개 로스쿨의 전문화과목 전임교수 현황을 정리한 것이다. 학교별 1번째 칸은 2012년, 2번째 칸은 2019년, 3번째 칸은 2024년을 기준으로 파악된 자료를 정리하였다. 2012년은 법학교수회 수첩의 전임교수 전공소개를 바탕으로, 2019년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수첩의 전임교수 전공소개를 바탕으로 정리하였고, 2024년은 각 법학전문대학원 홈페이지에 게시한 전임교수 전공소개 및 최근 개설강좌 등을 확인하여 작성한 것이다. 일부 부정확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며, 임용 당시의 전공이나 현재 연구하고 있는 전공 또는 강의개설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2) 필수과목에 대한 시험준비 부담과 3년의 로스쿨 교육과정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손종학, “로스쿨 시대의 법학교육과 법학시장”, 『법학연구』 제28권 제1호,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62면 이하 참조.

〈표 2〉 전문화과목 강의를 맡은 로스쿨 전임교수의 최근 12년간 변화

학교\과목 (특성화)	국제법	국제거래법	노동법	조세법	지식재산법	경제법	환경법
강원대 (환경)	김한택	홍석모	전형배*	김석환	정진근	한만주	박태현
	오시진		김희성		정진근 신동룡	이혁*	박태현 함태성 박시원
건국대 (부동산)	박병도	X	조용만	김영우	정연덕	정해방	이계수*
				X		X	
경북대 (IT)	김민서 채형복	정형진	윤진기 이달휴 문무기	이동식*	배대현 최승재	윤진기 신영수	김창조*
			이달휴 문무기		배대현 차상욱	신영수	
경희대 (글로벌기업)	이영준 최승환	X	강희원	이준규 김두형 황남석*	X	정완	박균성* 전경운*
	최승환			김두형 황남석*			전경운*
	백범석		한권택				
고려대 (GLP(국제))	강병근 박기갑 박노형 이재형	김정호* 신창섭	하경효* 박종희 박지순	신호영 박종수*	안효질 조영선	유진희* 이황	김연태* 이희정*
	강병근 이재형 조수정	신창섭	박종희 박지순			이황	
동아대 (국제상거래)	전순신 심영규	김용의 최성수	송강직	X	이점인* 최상필	김영호*	김세규* 최우용*
	심영규	김용의 최성수 신종일			최상필	X	최우용*
		최성수 신종일		노미리*			
부산대 (금융·해운통상)	박배근 박찬호	이세인* 손태우*	권혁	이정란	계승균 조현래	정대근* 주진열	이기춘*
					계승균 강명수		
					강명수	주진열	
서강대 (기업(금융))	오병선	왕상한*	김재훈	김영심	박준우	홍대식	이은기*
	X		심재진	X			X
서울대 (국제, 공약·인권, 기업금융)	정인섭 장승화 이근관 Folz	석광현	이철수	이창희 윤지현	정상조 박준석	권오승 이봉의	조홍식
	장승화 이근관 이재민					이봉의 임용	조홍식 허성욱
	장승화 이근관 이재민 원유민	이종혁	최석환				

학교\과목 (특성화)	국제법	국제거래법	노동법	조세법	지적재산법	경제법	환경법
서울시립대 (조세)	김대원 이창원	강정혜*	최창귀 노상현	김완석* 박훈* 이재호	전민기* 구대환	X	X
			노상현	이재호 양인준*	구대환		
				양인준* 김범준	X	박세환*	
성균관대 (기업)	나인균 성재호	남궁주현* 장준혁	김홍영	이전오* 이준봉	정차호	정호열*	김형성*
	성재호				정차호 이해완	정호열* 이선희*	강현호*
	성재호 이길원			이준봉		이선희* 손동환	
아주대 (중소기업)	소병천	윤성승*	이승길	최원	강현*	오승한	소병천*
					강현* 한지영*		
연세대 (공공거버넌스, 글로벌비즈니스, 의료·과학기술)	김대순 김준기* 박덕영*	안강현*	이상윤	박정우 이종교	나종갑 남형두	신현윤*	X
	김준기* 박덕영*					신현윤* 최난설현	
	박덕영* 이기범		권오성			최난설현	홍강훈*
영남대 (공익·인권)	이환규 이용호	X 권종걸	조임영	최성근*	이동형*	심재한*	김현준*
	이용호	이성원*					
원광대 (의·생명과학)	김성원	이상진	이희성	윤현석	정태호	윤현석*	유권홍
		최영란			X		X
	X	김희철*	X				
이화여대 (생명의료, 젠더)	최원목 김영석	김인호*	이승욱 박귀천	옥무석* 한만수*	전효숙* 신승남*	정재훈*	석인선*
				옥무석*	신승남* 이원복*		
				임재혁*	이원복*		X
인하대 (물류, 지적재산)	김현수 이석우 정찬모	이경규*	김인재	김의석* 김영순*	이경규* 이수미 홍승기*	손영화*	채영근*
		김천수 김린*			이경규 이수미 홍승기* 김원오		
	이석우 정찬모	X	김린*				
전남대 (공익·인권)	장신	신창선*	조상균	김재승	김원준 김정완	신창선*	정훈*
	장신 최혜선	최혜선*			X	장윤순	
	최혜선			X 박현주	류시원		

학교\과목 (특성화)	국제법	국제거래법	노동법	조세법	지적재산법	경제법	환경법
전북대 (동북아)	배정생 이세련	송양호*	김영문 김성진	한상국	최동배	박수영*	유진식*
			김성진	X			
제주대 (국제)	김부찬 김여선	오수용*	고호성*	X	X	고호성*	한삼인*
	김여선				문건영*		박준선*
	김여선 최지현	오수용* 조은희*	오대영				
중앙대 (문화)	제성호 이성덕 박원석	정홍식	유성재	김성균	이규호	조성국	이상돈
	이성덕						김중권*
충남대 (지적재산)	이재곤 이길원	X	김소영	서보국*	최형구 육소영 김동준 이철남	X	최인호*
	이재곤		김기선		육소영 김동준 이철남		
	도경옥						
충북대 (과학기술)	이영진	윤남순	노병호	X	윤종민 신혜은	이동원	최선웅*
	X	X	김태현				이비안*
한국외대 (국제)	이장희	박영복*	이정	X	X	김동훈*	최승필*
	조정현	X	X			X	
한양대 (공익인권 및 거버넌스, 지식문화 및 과학기술)	이재민 최태현 Reid	김선국	박수근 강성태	오윤	윤선희 김병일 박성호	김차동* 이호영	김홍균
	최태현	이종혁	강성태 고수현		김병일 박성호		윤혜선*
	김성원	이주연*					

* 전적으로 해당 분야의 전문화과목을 담당하지 않는 전임교수(공법/민사법/형사법/법조실무 전임교수가 전문화과목을 보조적으로 개설하는 경우 또는 복수의 전문화과목을 맡은 경우 등)
- 밑줄이 있는 교수의 경우 정년퇴임이 5년 이내인 경우임(총 86명)

아래의 <표 3>은 위의 <표 2>를 바탕으로 25개 로스쿨의 전문화과목 전임교수 총원을 간단하게 연도별로 합산한 것이다.

<표 3> 전문화과목 강의를 맡은 로스쿨 전임교수 총원

연도(총원)	국제법	국제거래법	노동법	조세법	지적재산법	경제법	환경법
2012(233)	50	25	33	31	39	28	27
2019(213)	39	27	30	26	38	26	27
2024(191)	36	22	26	24	35	24	24

변호사시험 전문화과목 7개를 담당하는 전임교수의 총원은 2012년에는 233명이었으나, 2019년에는 213명으로 2012년 대비 9% 감소되었으며, 2024년 현재에는 191명으로 2012년 대비 19% 감소되었다. 위 <표 2>에서 별표로 표시된 전임교수의 경우 주로 필수과목(또는 실무과목)을 강의하면서 보조적으로 전문화과목을 개설하는 경우로서 이러한 현실을 감안한다면 7개 전문화과목만 전담하는 전임교수는 2012년 192명에서 2024년 현재 140명 정도로 28% 감소되었다고 할 수 있다.

민사법과 형사법의 시험 비중이 늘어나는 최근의 경향을 반영하여 전문화과목을 전담할 전임교수를 더 이상 채용하지 않는 법전원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국제법(2개 학교), 국제거래법(6개 학교), 노동법(3개 학교), 조세법(7개의 학교), 경제법(5개 학교), 환경법(6개 학교)의 경우 퇴직한 빈자리를 더 이상 채우지 않고 있다.

앞의 <표 2>에서 파란색으로 밑줄이 있는 교수(5년 이내 정년퇴임 예정)의 숫자가 7개 과목 모두 86명이며, 각 과목별로 40% 가까이 된다는 점에서 5년 이후에 전문화과목 전임교수의 숫자는 절반이하로 감소하게 될 것이다. 조세법의 경우 현재 24명에서 5년 이내 퇴임으로 50%인 12명으로 줄어들 수 있으며 현재 응시자도 최하위인데다가, 정규강의 수강생이 거의 없기 때문에 각 로스쿨에서 충원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수강생이 없어서 로스쿨에서 전문화과목이 폐강이 되기 때문이다.³⁾ 학부 교양과목이나 일반대학원 세미나과목으로 책임시수가 해결될 수밖에 없다면 굳이 로스쿨 전임교수로 채용할 필요는 없다는 주장을 반박하지 못하고 있다.

3. 전문화과목 수강생 감소와 폐강

로스쿨 출범 당시와 그 이후 몇 년간은 전문화과목이나 기초과목에서 수강생의 변화는 크게 없었다. 그러나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 직면하자 전문화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하는 학생이 줄어들기 시작했으며, 전임교수의 15주 정규강의를 원하지 않는 재학생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전문화과목에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 여력이 없다는 풍조가 만연하면서 많은 학교들이 전문화과목의 기초이해에 필요한 여러 강의 중 1개 정도만 겨우 유지되고 있다. 예를 들어 조세법의 경우 조세법총론,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법사례연습, 조세법판례연구 등이 개설될 수 있으나 3명 전후의 수강신청으로 폐강 여부가 학기마다 문제가 되고 있다.

3)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이미 백경화·장연화, “우리나라 변호사시험 제도의 정상화에 관한 소고 - 변호사시험 출신 변호사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 『동아법학』 제84호, 2019, 284면 이하에서 지적하고 있다.

수험생이 가장 많은 국제거래법의 경우에도 아이러니하게 정규강의(1학기 15주)보다는 시험대비용 단기특강으로 충분하다는 학생들의 입장을 자주 접하게 된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수험생이 증가하는 것과는 반대로 국제거래법 전임교수의 총원은 2012년에 비해 계속 감소하는 중이다. 결론적으로 국제거래법과목의 경우 시험을 준비하는 부담은 7개 과목 중 가장 낮은 하나 이로 인해 정규강의를 듣지 않아도 시험대비가 가능하므로 정규강의 수강생이 줄어들어서 전임교수를 충원할 필요성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합격률 상위권학교의 경우 또 다른 원인으로 전문화과목의 수강을 통해서 그 수강이력이 취업에 유리한 경우(경제법, 조세법 또는 지적재산권법)에 수강을 신청하는 경향이 있으며, 취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합격률 상위권학교에서도 수강기피현상이 발생하고 있다.⁴⁾ 전문화과목의 선택에 있어서 재미있는 내용 중 하나는 수도권 로스쿨과 지방권 로스쿨에서 경제법 선택 수험생의 차이에 대한 다음과 같은 설명도 있었다. “경제법의 경우에는 지방의 로스쿨에 다니는 학생들이 이 과목을 어렵게 느끼고 있고, 로펌에서의 수요가 많기 때문에 상위권 로스쿨에 있는 학생들이 많이 선택할 것 같아서 자신들은 경쟁에서 치일 것이라 생각되어 선택이 꺼려지는 것 같다고 합니다.”⁵⁾

따라서 몇 개의 로스쿨을 제외하고는 전문화과목에 대한 강의 개설이나 수강생들의 참여가 개원 초기에 비해서 절반 이하라는 현상이 나타났고, 전문화과목 전임교수가 퇴임하는 경우에 그 결원을 보충하지 않거나 필수과목 전임교수에게 전문화과목의 강의를 보조적으로 맡기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5년간 더 지속되고 더 심화된다면 전문화과목은 대부분 강사로 대체되거나 공법/민사법/형사법 전임교수에 의해 필요시에만 개설될 것이며, 점차 전문화과목을 주로 연구하는 전임교수가 절반 이하로 감소하여 변호사시험 등을 출제할 로스쿨 소속 전임교수를 찾기 힘들 것이다. 2024년 현재에도 전문화과목별 30명 전후의 전임교수들이 있지만 정년이 다가오거나 연구년으로 국내부재한 경우 등 출제를 사양하는 경우가 많다.

직접적인 경험으로 필자는 변호사시험 모의고사 전문화과목 출제위원장직을 맡으면서 7개 선택과목의 출제위원 위촉을 부탁드려야 했을 때 대부분의 과목이 과목별 6명~10명 정도의 전임교수만 출제가 가능하여 섭외의 어려움을 겪었다. 이미 법무부가 주관하는 변호사시험에서는 로스쿨 소속 전임교수가 아닌 법과대학 소속 전임교수들에게도 위촉을 의뢰하고 있는 실정이다.

4)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이미 박덕영, “로스쿨에서 법학 교육과 평가 - IV. [선택과목] 선택과목의 교육과 평가 -”, 『고려법학』 제95호,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9, 403면 이하에서 지적하고 있다.

5) 박덕영, 앞의 논문, 410면 이하, 영남대 심재한 교수의 토론 내용.

조만간 로스쿨에서 전문화과목에 대한 강의들이 점점 폐강되면서 시험대비 단기특강 등으로만 시험을 준비하고 출제도 더 이상 로스쿨 전임교수가 출제하지 않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하리라 예상된다. 완전히 로스쿨 시스템의 출범취지인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에는 역행하는 것이다.

III. 전문화과목의 부실화와 연계된 문제

1. 로스쿨 특성화의 부실화

〈표 4〉 4주기 법학전문대학원 인증평가 기준 중 특성화 선택과목 수

4.4.2. 특성화

◎ (1) (특성화 교육의 선택과목 수) 특성화 교육과 관련하여 개설한 전공 선택과목의 수는 3년의 교육과정 중 5개 과목 이상이다.(3주기에서는 10개 과목 이상)

[4주기 해석지침]

[평가요소 ◎ (1) 관련] 특성화 프로그램 관련하여 개설한 전공 선택과목은 특성화교육의 목표에 부합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어야 하고, 3년의 교육과정 중 5개 과목 이상이면 적절한 것으로 평가하며, 개설하였으나 수강인원 부족 등으로 인하여 폐강된 과목은 개설된 것으로 인정함.

2023년 11월에 발표된 4주기 법학전문대학원 인증평가 기준에서 특성화 교육의 선택과목 수가 3년의 교육과정 중 10개 과목 이상에서 5개 과목 이상으로 축소하였다. 이러한 기준의 완화는 25개 로스쿨에서 특성화 교육과 관련한 과목의 수강생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점과 이러한 영향으로 강의를 담당할 전임교수가 점점 부족해지고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대한변호사협회가 발행한 책자인 「2020년 법학전문대학원 평가보고서」에서 개별 항목인 ‘라. 특성화 분야 운영의 충실성’에 대한 보고서 내용에서도 명확하게 확인된다.⁶⁾ 이 보고서는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중 등록변호사 및 변협 연수참가자 1,275명에 대한 설문조사의 응답(703명 응답) 및 전국 변협 개업회원 23,662명에 대한 설문조사의 응답(2,780명 응답)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이 보고서의 특성화 항목에 대한 응답에서 25개 로스쿨별 특성화 과목이 무엇인지도 모르겠다는 답변과 함께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답변이 60%가 넘었다. 특히 특성화 분야가 진로선택 및 취업과정에서 도움이 되었냐는 질문

6) 대한변호사협회, 「2020년 법학전문대학원 평가보고서」, 2021.

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부정적 답변이 절반에 달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그나마 긍정적이라고 할 만한 학교는 강원대(환경), 동아대(국제상거래), 서울시립대(조세), 이화여대(생명의료, 젠더) 및 충남대(지적재산)로서 졸업생 변호사의 응답에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이 20~30% 정도 되었다. 그러나 2019년까지의 학교생활을 반영한 것으로 2020년 이후 전임교수의 비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 사항은 반영되지 않았다. 따라서 앞으로 긍정적인 응답비율은 계속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표 5〉 4주기 법학전문대학원 인증평가 기준 중 특성화 반영 연구지

〈4주기 평가기준〉

3.2.2. 연구소 지원

○ (5) (연구소의 특성화 반영 연구지 발간) 특성화를 반영한 연구지를 연 1회 이상 (3주기에서는 ◎였으며, 연 2회 이상 발간이 기준) 정기발간하고 있다.

[4주기 해석지침]

[평가요소 ○ (5) 관련]

- ① 연구지는 매년 정기적으로 발간되는 것을 기준으로 함.
- ② 게재된 논문 등이 해당 법학전문대학원의 특성화를 반영하고 있어야 함.
- ③ 평가기간의 연구지 발간 실적을 평균하여 평가함.

* 정량평가요소

2023년 11월에 발표된 4주기 법학전문대학원 인증평가 기준에서 연구소의 특성화 반영 연구지 발간이 1년에 2회에서 1년 1회로 축소되었다. 이러한 기준의 완화는 25개 로스쿨에서 특성화 학술지를 담당할 전임교수와 연구소의 인력이 부족한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2. 법조 유사직역 자격사와의 갈등 심화

변호사시험 전문화과목 부실화와 관련되는 당면 문제는 변호사 이외의 법조 유사직역 자격사와의 (공동)소송대리권 갈등에서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점이다.⁷⁾ 세무사(공인회계사 포함)는 세무업무와 관련하여 행정심판대리권 외에 조세소송대리권을 허용해달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변리사의 경우 현재 허용되어 있는 심결취소소송의 소송대리권 외에 추가적으로 소송가액이 훨씬 높은 특허침해소송의 (공동)소송대리권도 주장하고 있다. 노무사의 경우에도 세무사나 변리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의 주장이 존재한다.

세무사의 조세사건에 대한 소송대리권 요구와 관련하여 오래전부터⁸⁾ 변호사의 세무사

7) 법조 유사직역 자격사 제도의 정비에 관한 내용으로 손종학, “로스쿨 시대의 법학교육과 법학시장”, 『법학연구』 제28권 제1호,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84면 이하 참조.

자격 자동 취득과 등록 및 명칭 사용에 대한 갈등은 현재까지 지속되어 왔다.⁹⁾ 이러한 문제점 외에 추가적으로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회계장부작성(기장)과 성실신고확인 등 세무 업무 대리) 허용요구도 계속 대립하고 있다.¹⁰⁾

그 외에 변호사 총원과 법조 유사직역 자격사의 총원의 차이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점도 변호사로서는 불리한 입장이 될 수 있다. 변호사는 3만명 이상이긴 하나, 공인회계사 2만3천명 이상, 세무사 1만5천명 이상, 변리사 3천명 이상, 노무사 5천명 이상, 관세사 2천명 이상인 현재 상황에서 세무사회가 조세소송대리권 허용을 위해서 변리사·관세사 등과 공동 추진을 시도하고 있다는 상황은 변호사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법조 유사직역 자격사 측에서 로스쿨과 변호사시험에서 전문화과목의 부실화를 논거로 주장하는 경우에 소송대리권 갈등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IV. 전문화과목 부실화에 대한 개선방안

변호사시험 전문화과목(선택과목) 빅3 쏠림현상을 완화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개선방안은 법률개정을 통해 전문화과목 시험 평가 P/F제도 도입이다. 전문화과목에 대한 변호사 시험 평가를 현재의 조정점수제도에서 P/F평가(점수는 평가하지만 일정 점수를 기준으로 합격/불합격만 판정)제도로 변경하여 조정점수로 인한 전문화과목간 유불리를 제거할 필요가 있다. 결국 전문화과목의 점수는 총점에는 합산되지 않는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1. 변호사시험법 개정(안) - 전문화과목 시험 P/F 도입

아래의 <표 6>에서 현행 변호사시험 과목별 배점 및 과락 점수표를 볼 수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8조제3항 [별표 4] 1호에 의해 전문화과목의 만점은 160점이며 총점은 1,660점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전문화과목의 배점 영향력은 공법/형사법의 객관식 점수(100점)보다 더 높다는 점으로 인해 조정점수라는 변수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선택의 편중현상이 생길 수 밖에 없다.

8) 세무사의 자격이 있는 자 중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 하여금 세무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세무사법 제20조 제2항이 청구인의 표현의 자유 및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 2008. 5. 29. 선고 2007헌마248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9) 이세진·임재범, “세무사 자격 취득을 둘러싼 현안과 과제”, 이슈와 논점 제1954호, 국회입법조사처, 2022.6.3.

10) 이 문제는 헌법재판소 2018. 4. 26. 선고 2016헌마116 결정과 헌법재판소 2018. 4. 26. 선고 2015헌가19 결정에서 헌법불합치가 선고된 이후 헌법재판소 2021. 7. 15. 선고 2018헌마279, 2018헌마344(병합), 2020헌마961(병합) 전원재판부 결정에서 2018년 1월 1일 이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게는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지 않도록 한 세무사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은 기각되어 계속 문제가 되고 있다.

〈표 6〉 과목별 배점 및 과락 점수표

구 분	민사법	공법	형사법	선택과목	총점
배점(만점)	700	400	400	160	1,660
선택형	175	100	100	-	-
논술형(사례형)	350	200	200	160	-
논술형(기록형)	175	100	100	-	-
과락기준	280	160	160	64	-
	단, 원점수와 조정점수 중 하나가 40% 이상이면 면과락 ¹¹⁾				

아래의 〈표 7〉에서 전문화과목에 대한 변호사시험법 관련 규정의 개정안을 확인할 수 있다. 변호사시험법 제10조 제3항과 제4항에 “제9조제1항제4호의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과”라는 문구를 추가하게 되면 전문화과목은 법조윤리 과목과 같이 P/F 평가로 변경되는 효과가 있다. 나머지 문제들은 시행령에서 조정가능하기에 현행의 시험제도를 그대로 두고서 오로지 전문화과목의 점수는 합격과 불합격을 나누는 기준일 뿐 총점에는 합산되지 않게 하는 것이 가능하다.

〈표 7〉 전문화과목 관련 변호사시험법 개정안

현행법	개정법(안)
제9조(시험과목) ① 시험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좌 동
④ 제2항에 따른 시험과목을 신설·폐지하거나, 제3항에 따라 시험과목의 출제 범위를 변경할 경우에는 해당 과목의 시험 예정일부터 역산(逆算)하여 2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시험과목을 신설하거나, 제3항에 따라 시험과목의 출제 범위를 변경할 경우에는 해당 과목의 시험 예정일부터 역산(逆算)하여 2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
제10조(시험의 합격 결정) ① (생략)	좌 동
② 시험의 합격은 선택형 필기시험과 논술형 필기시험의 점수를 일정한 비율로 환산하여 합산한 총득점으로 결정한다. 다만, 각 과목 중 어느 하나라도 합격최저점수 이상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좌 동

11) 변호사시험은 기본과목(민사법/공법/형사법)의 경우 선택형·사례형·기록형 시험의 합산점수를 기준으로 과락 여부를 결정함. 따라서 선택형·사례형·기록형 시험의 채점점수가 합산되기 전까지는 과락 여부를 미리 알 수 없음.

현행법	개정법(안)
③ 법조윤리시험은 합격 여부만을 결정하고, 그 성적은 제2항의 총득점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9조제1항제4호의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과 법조윤리시험은 합격 여부만을 결정하고, 그 성적은 제2항의 총득점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선택형 필기시험과 논술형 필기시험 간의 환산비율, 선택형 및 논술형 필기시험 내에서의 각 과목별 배점비율, 각 과목별 필기시험의 합격최저점수, 법조윤리시험의 합격에 필요한 점수, 성적의 세부산출 방법, 그 밖에 시험의 합격 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선택형 필기시험과 논술형 필기시험 간의 환산비율, 선택형 및 논술형 필기시험 내에서의 각 과목별 배점비율, 각 과목별 필기시험의 합격최저점수, 제9조제1항제4호의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과 법조윤리시험의 합격에 필요한 점수, 성적의 세부산출 방법, 그 밖에 시험의 합격 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따라서 개정안으로 변경된다면 전문화과목 160점은 총점에 합산되지 않고 변경된 총점은 기존 1,660점에서 1,500점으로 바뀌게 된다. 전문화과목의 합격기준은 법조윤리와 마찬가지로 시행령에서 과락기준으로 하거나 다른 기준으로 정할 수 있다.

이러한 개정안은 변호사시험법 제9조 제4항에 규정된 시험과목의 신설·폐지 또는 제3항에 따른 시험과목의 출제 범위의 변경과는 상관 없는 개정이기 때문에 2년의 유예기간이 필요하지 않다. 이러한 개정안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수험생이나 학교는 없다. 그러나 법적 안정성과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부칙에 1년의 유예기간을 두는 것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차후 전문화과목에 대한 시험의 폐지와 학점이수제로 전환하기 위해서 제9조 제4항의 문언에서 ‘시험과목의 폐지’는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법률개정 이후의 전문화과목 내실화 방안

우선적으로 2026년 제15회 변호사시험에서는 본 개정안이 통과되어 효력을 발휘해도 1년의 유예기간을 부칙으로 두었기에 적용되지 않고 구법이 적용된다. 그러나 15회 수험생들은 불이익이 아니라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기에 당장 적용되기를 바라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불만을 제거하기 위해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도 고려해볼 수 있다.

아래 〈표 8〉의 시행령을 개정하여 전문화과목의 점수를 조정하면 유사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표 8〉 전문화과목 관련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규정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8조(시험의 합격 결정)

③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선택형 및 논술형 필기시험 내에서의 각 과목별 배점비율, 각 과목별 필기시험의 합격최저점수, 법조윤리시험의 합격에 필요한 점수는 별표 4와 같다.

■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별표 4]

시험의 합격 결정에 관한 기준(제8조제3항 관련)

1. 각 과목별 배점비율

..., 선택과목의 만점은 공법, 형사법 과목 만점의 40퍼센트로 한다.

동법 시행령 제8조제3항 [별표 4] 1호의 각 과목별 배점비율에 있어서 “..., 선택과목의 만점은 공법, 형사법 과목 만점의 40퍼센트로 한다.”라는 부분을 10퍼센트로 개정하면 변호사시험에서 전문화과목의 상대평가 영향력은 줄어들고 거의 P/F 평가와 유사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 경우 2026년 제15회 변호사시험에서 전문화과목의 만점은 160점이 아니라 40점이 되며 총점은 1,540점으로 변경된다. 40점의 과락기준은 16점이며 통상 20~25점을 전후하여 득점한다고 예상했을 때 편차는 10점을 넘지 않게 되어서 그 효과는 거의 P/F 제도와 유사하다. 공고문에서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선택과목의 만점(160점)을 1/4로 계산하여 총점에 산입한다는 내용을 공지하면 충분하고 행정적으로 출제와 채점 등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서 복잡하거나 문제가 발생할 소지도 없다.

그 이후 졸업요건에 일정한 전문화과목(기초과목 포함)을 이수하는 기준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차원에서 논의하여 공동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 단계로서 민사법/형사법/공법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학교에서 전문화과목에 대한 평점체계를 P/F로 변경하여 전문화과목에서 지나친 경쟁구도를 배제하고 수강생들이 전문화과목의 기본 내용을 골고루 학습할 수 있도록 변경할 필요가 있다.

졸업요건에 필수적인 학점이수로서 전문화과목(특성화과목 또는 기초과목을 포함)을 포함시키는 것은 법령상 제한이 없으며 각 학교별로 학칙개정을 통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특히 합격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로스쿨에서는 자율적으로 졸업요건에 전문화과목 학점이수를 추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이러한 문제를 공동으로 논의¹²⁾하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령 또는 로스쿨 인증평가

12)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김인재, “변호사시험 선택과목 개선방안”, 〈변호사시험 선택과목 개선 토론회〉 자료집, 법무부 법조인력

기준에 전문화과목(기초과목 및 외국법과목 포함) 학점이수제를 도입하여 학칙개정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¹³⁾

V. 결론 및 요약

1. 변호사시험 전문화과목(선택과목) 응시자 현황에서 분석되는 점은, ① 변호사시험 준비에 부담이 적고 ② 단기특강으로 전문화과목 시험준비가 가능하며 ③ 표준점수에서 크게 불리하지 않은 과목으로 응시생들의 선택이 쏠리는 현상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변호사시험 필수과목(민사법/형사법/공법)의 시험 준비 부담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과 전문화과목별 시험준비가 완성된 재학생(노무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등의 전문자격사 또는 경험자)들로 인해 표준점수의 불리함이 있는 과목이 존재한다는 점은 해결되어야 할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현재의 시험제도로는 더 이상 개선될 여지는 보이지 않는다.
2. 변호사시험 전문화과목 7개를 담당하는 법학전문대학원 전임교수의 총원은 2012년 232명에서 2024년 현재에는 191명으로 2012년 대비 19% 감소되었다. 7개 전문화과목만 전담하는 전임교수는 2012년 192명에서 2024년 현재 140명 정도로 28% 감소되었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전문화과목을 전담할 전임교수를 더 이상 채용하지 않는 법전원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5년 이내에 40% 이상의 교수가 퇴임하게 되며 신규 충원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로스쿨을 제외하고는 전문화과목 폐강 현상이 나타났고, 이러한 이유로 전담 전임교수의 결원을 보충하지 않거나 부수적으로만 개설되고 있다. 이 상황이 지속된다면 정규강의 없이 시험만 남는 상황이 된다.
3. 법학전문대학원 인증평가 기준 중 특성화 교육의 선택과목 수가 10개 과목에서 5개 과목으로 축소되었다. 또한 연구소의 특성화반영 연구지 1년 2회에서 1회로 축소되었다. 이러한 기준 완화는 변호사시험 전문화과목 문제점이 그대로 투영한 결과다. 특히 특성화와 전문화와 관련된 로스쿨 학생들의 참여도는 거의 없다는 점에서 로스쿨 출범 취지는 흔들리고 있다.
4. 법률개정을 통한 전문화과목 부실화 개선방안으로 시험제도는 그대로 두고 오로지 전

과 주최, 2023.9.21. 참조.

13)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임 원장인 양선숙 교수는 학점이수제와 변호사시험제도의 병행안 보다는 단독의 학점이수제가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양선숙, “로스쿨에서의 전문법률과목교육과 학점이수제의 도입 - 도산법 사례를 통해서 본 선택과목시험의 개선안 마련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 35권 제1호,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24, 474면 이하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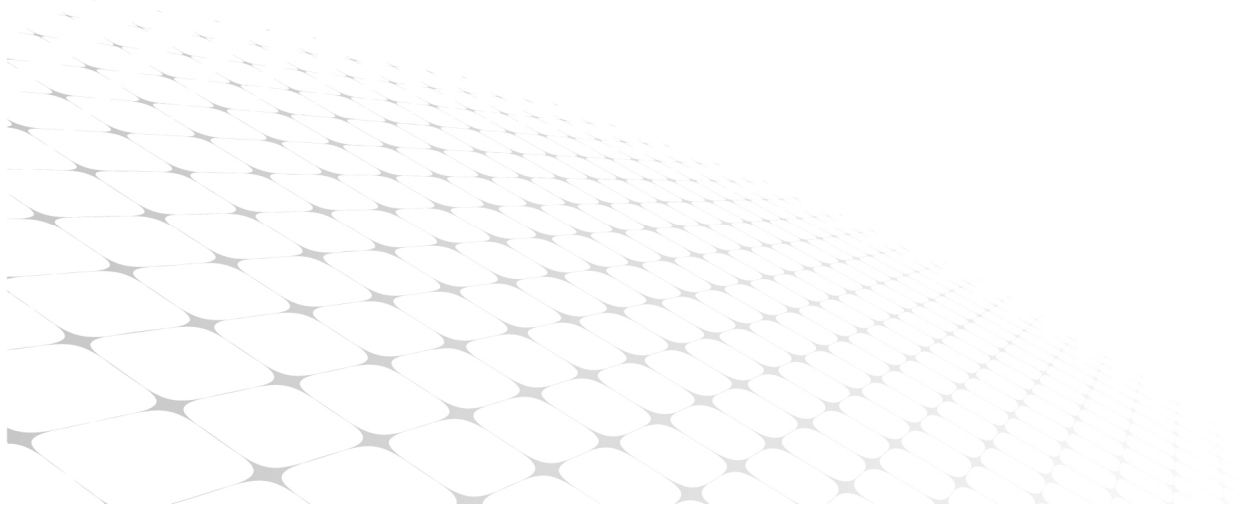
문화과목의 점수는 총점에 합산하지 않고 법조윤리와 같이 합격과 불합격으로만 판단하는 P/F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법률개정에는 본문의 개정안과 같이 변호사시험법 제10조 제3항과 제4항에 ‘제9조제1항제4호의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과’라는 문구만 추가하면 해결된다. 제9조 제4항(시험과목의 ‘폐지’ 문구 삭제)과 부칙(개정안의 1년 유예 적용)은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학점이수제로 나아가기 위한 추가 조치이다.

〈참고문헌〉

- 손종학, “로스쿨 시대의 법학교육과 법학시장”, 「법학연구」 제28권 제1호,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53면 이하.
- 공영호, “미국 로스쿨 교수의 양성 방식 및 로스쿨 로리뷰에 관한 쟁점 - 한국의 법학 학문 후속세대 양성에 시사점 -”, 「법학연구」 제29권 제2호,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165면 이하.
- 백경희·장연화, “우리나라 변호사시험 제도의 정상화에 관한 소고 - 변호사시험 출신 변호사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 「동아법학」 제84호, 2019, 265면 이하.
- 박덕영, “로스쿨에서 법학 교육과 평가 - IV. [선택과목] 선택과목의 교육과 평가 -”, 「고려법학」 제95호,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9, 403면 이하.
- 대한변호사협회, 「2020년 법학전문대학원 평가보고서」, 2021.
- 이세진·임재범, “세무사 자격 취득을 둘러싼 현안과 과제”, 이슈와 논점 제1954호, 국회입법조사처, 2022.6.3.
- 김인재, “변호사시험 선택과목 개선방안”, 〈변호사시험 선택과목 개선 토론회〉 자료집, 법무부 법조인력과 주최, 2023.9.21.
- 양선숙, “로스쿨에서의 전문법률과목교육과 학점이수제의 도입 - 도산법 사례를 통해서 본 선택과목시험의 개선안 마련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 35권 제1호,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24.
- 강명수, “변호사시험 선택과목 제도 개선방안 연구”, 「법학논고」 제84집,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24.1.

[토론]

- **이상훈** 법무부 법조인력과 과장
- **구본억** 교육부 인재양성지원과 과장
- **김정규** 대한변호사협회 교육이사
- **문무기**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론 1

이상훈 법무부 법조인력과 과장

Blank area for discussion content with horizontal dotted lines.

토론 2

구본억 교육부 인재양성지원과 과장

토론 3

김정규 대한변호사협회 교육이사

I. 발표의 쟁점

1. 현행 변호사시험 전문화과목의 쏠림현상은 명확하다. 발표자는 그에 대한 진단을 명확히 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2. 발표자의 대안은 전문화과목 시험 P/F 도입이다. 위 대안에 대해서는 항을 달리하여 살피고자 한다.

II. 전문화과목 시험 P/F에 대하여

1. 현행 시험 체제하에서 점수제가 아니라 합격, 불합격 제도로 변경하는 것에는 동의한다. 우선, 현행 체제하에서 전문화과목이 차지하는 점수의 비중이 상당히 과중하기 때문이다. 수험생이 선택하는 과목에 따라, 그 과목의 난이도에 따라 시험의 합격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잣대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우려된다.
2. 다만 현행 시험 형태인 사례형을 유지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다. 사례형이 아니라 선택형 즉 객관식 형태로 출제하는 것이 다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변호사는 법률전문가로서, 법조문을 해석하고 실제 사안에 적용하는 것이 중요한 자질이므로, 이러한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선택형 보다는 사례형으로 시험을 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 선택형 시험의 경우, 암기 위주의 공부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사례형은 중요한 법리를 출제할 수 있는 점에서 사례형 문제가 더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3. 또한 시험이 합격, 불합격제도로 변경된다면, 법조윤리의 시험이 치러지는 시기에 함께 실시한다면, 수험생의 수험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이다.

토론 4

문무기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제자가 제시한 변호사시험의 전문화과목(이하 “선택과목”이라 한다) 현황 분석과 개선방안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한다. 당초 변호사시험의 선택과목제도는 학생들에게 전문성을 키울 기회를 제공하고, 실무에서 필요한 다양한 법학 분야에 대한 이해를 심화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선택과목 운영 방식은 이러한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다. 결국 선택과목제도는 로스쿨 교육의 전문성과 특성화라는 본래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으며, 변시 합격을 위한 “기술적 취사·선택”의 도구로 전락했다. 특히 수험생들이 본인의 흥미나 법조 수요에 기초하지 않고, 어느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변시 합격이라는 관점에서 전술적으로 유리한가, 단기특강으로 변시 준비가 가능하면서도 표준점수 계산에 유리한가 등을 기준으로 하여 몇몇 과목으로 쏠리는 현상은 로스쿨을 통한 법학교육 발전이라는 근본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제시된 P/F 제도 도입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실현 가능한 대안이라고 생각된다.

먼저, P/F 제도 도입은 학생들의 과목 선택의 자율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것이다. 선택과목의 점수가 합격 여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결과, 특정 과목에 유리한 배점 구조가 형성되거나 학생들의 학문적 관심과 법조인으로서의 발전 가능성이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현재 학생들은 표준점수제로 인해 높은 점수를 받기 쉬운 과목으로 쏠리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내용이 방대하고 난이도가 높으며 전문자격 보유자들이 많이 응시하는 노동법, 조세법, 지적재산권법 등은 기피 대상이 되고 있다. 이는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키우고자 하는 학생들에게도 불리하게 작용하여, 결과적으로 법조계 전체의 전문성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P/F 제도가 도입되면 이러한 왜곡 현상이 상당 부분 해소되어, 학생들은 자신들의 관심과 적성, 향후 전문분야 선택을 고려한 진정한 의미의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P/F 제도는 상대평가에서 오는 과도한 경쟁과 불공정성을 줄일 수 있다. 학생들이 과목별 난이도 차이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합격/불합격만을 평가하는 방식이 공정성을 더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선택과목 전담 교수진의 감소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 발제문에 따르면 선택과목을 전담하는 전임교수가 2012년 192명에서 2024년 140명으로 28% 감소했다. 이는 수강생 감소로 인한 강의 폐강, 전임교수 미충원의 악순환 때문이다. 특히 민사법·형사법의 시험 비중

이 늘어나면서 선택과목 전담 전임교수를 더 이상 임용하지 않는 로스쿨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법학교육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저해하고, 우리나라 법학의 학문적 토대를 약화시키며, 학문 후속세대의 육성이 어려워지는 심각한 난제를 낳고 있다. P/F 제도가 도입되면, 선택과목의 난이도나 변시 경쟁력보다는 학문적 관심이나 실무 적합성을 기준으로 과목을 선택하는 문화가 조성될 수 있다. 이는 법학 전반의 균형 잡힌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P/F 제도 도입으로 수강생이 늘어나면 전문 교수진의 유지와 충원이 가능해질 것이며, 이는 법학교육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법조 유사직역과의 갈등 해소에도 기여할 것이다. 현재 노무사, 세무사, 변리사 등이 각각의 영역에서 소송대리권 확대를 요구하며 변호사들의 전문성 부족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세무사회는 조세소송대리권 허용을 위해 변리사·관세사 등과 공동 추진을 시도하고 있는데, 이는 변호사 3만명, 공인회계사 2만3천명, 세무사 1만5천명, 변리사 3천명, 노무사 5천명이라는 현재 상황에서 변호사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변호사로서 실무에 진출한 이후 노동법, 경제법, 조세법 등 선택과목의 전문지식이 필수적인 분야에서 변시 준비 과정에서 학습하지 않았던 영역이라면 제대로 경험할 기회 자체부터 부족해진다. 이는 신입 변호사의 실무 적응력을 떨어뜨리고, 법률서비스의 질적 저하로도 이어질 수 있다. P/F 제도 도입을 통한 선택과목 교육 강화는 이러한 갈등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고, 법조 유사직역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에도 긍정적으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선택과목의 내실 있는 교육을 통해 실무 대응능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 현재까지는 단기특강 위주의 변시 준비로 인해 깊이 있는 학습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많은 로스쿨이 선택과목의 기초이해에 필요한 여러 강의 중 1~2개 정도만 겨우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어 조세법의 경우 조세법총론,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법사례연습, 조세법판례연구 등이 개설될 수 있으나 3명 전후의 수강신청으로 폐강 여부가 학기마다 문제화되고 있다. 노동법의 경우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위원회법, 비정규직·고용평등관계법, 고용보험·산재보험관계법 등의 학습이 요구되지만 “주요 판례 30선” 해설에 그치고 있다. P/F 제도 도입은 이러한 병폐를 해소하고 심도 있는 법학교육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다만, 선택과목의 P/F 제도 도입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적극 고려해야 할 것이다. 첫째, 합격 기준의 설정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너무 낮은 기준은 선택과목 학습의 부실화를, 너무 높은 기준은 또 다른 부담으로 기능하여 더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P/F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과목별 기본적인 학습목표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명확한 평가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학생들이 선택과목에서 실질적으로 유의미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교육 내용과 강의의 질을 확보함을 전제로, 선택과목 학습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차원에서 졸업요건에 선택과목 이수학점을 포함시키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법학전문대학원 인증평가 기준에서 선택과목 관련 항목을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변호사시험 선택과목의 P/F 제도 도입은 수험 중심 과목 선택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고, 실무 적합성과 학문적 다양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이다. 특히, 선택과목의 P/F 제도 도입은 발제자가 제시한 것처럼, 변호사시험법 제10조 제3항과 제4항에 “제9조 제1항 제4호의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과”라는 문구를 추가하는 간단한 법률 개정만으로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상당 부분 해소하고, 로스쿨 본연의 법학교육 목표를 달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된다면, 변호사시험이 단순한 자격시험을 넘어 법조실무와 법학교육을 잇는 가교(架橋)로서의 역할을 보다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는 단순한 시험제도 개선을 넘어 우리나라 법조계의 전문성·경쟁력 강화와 법학이라는 학문영역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법률서비스의 질적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다. 이를 통해 변호사로서의 전문성과 사회적 책무 역량을 두루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발제자가 제안한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찬성하며, 그 조속한 입법화를 촉구한다.

